

#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입사원 채용공고

스마트 사회를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 전문기관인

LX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변화와 도전을 함께할 인재를 모집합니다.

## 1. 채용분야 및 지원자격

### □ 분야별 채용인원

채용직렬	채용분야		채용예정인원	비고	
기획경영직 (3)	기획행정	장애	1	채용형 인턴 으로 선발	
	경영회계	장애	1		
		보훈	1		
	소계		3		
국토정보직 (92)	지적측량	일반	71		
		지역 모집	강원		8
			제주		3
		장애	5		
	보훈	5			
	소계		92		
보조직(고졸전형) (10)	지적측량		10		
	소계		10		
무기계약직 (15)	지적측량	일반	15		
		소계	15		
합 계			120		

- 분야별 주요업무 내용은 직무설명서 참조
-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은 하단 참조
- 보훈채용은 국가보훈처 추천자 대상 별도 진행
- 지역모집 지원자격은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가능하며, 합격자는 정규직 임용 후 10년간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 제한됨.

## □ 고용형태 및 근무지

### ○ (고용형태)

- 정규직(기획경영직, 국토정보직, 보조직): 약 4개월 간 채용형 인턴(연수교육 기간 포함)을 거친 후 교육성적, 업무수행능력, 근무자세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규직으로 임용
    - \* 기획경영직 분야는 인턴기간 중 일정기간 현장업무 근무 예정
    - \* 채용형 인턴 평가기준은 별도 방침에 의함.
    - \* 정규직 임용직급 : (기획경영직/국토정보직)-7급, (고졸전형)-보조직
  - 정규직(보조직\_고졸전형): 정규직 임용후 4년 이상 근무 후 공사에서 정한 전직절차를 통과한 경우 7급으로 전환
  - 무기계약직: 3개월 간 수습기간(연수교육 기간 포함) 후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양호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임용
- (근무지) 공사 전국단위 기관 배치(단, 지역모집 합격자는 해당 지역)

## □ 지원 자격 안내

- (블라인드 채용) 학력, 전공, 성별, 연령, 어학성적 제한 없음.
  - 단, 18세 미만자, 공사 정년(60세) 초과자 제외
- (기준일) 자격증, 학력 등 지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.
- (근무기준) 임용예정일(2021. 12. 27.) 이후 전일 근무 가능한 자(전분야 공통)
- (중복지원) 채용직렬 및 채용분야를 달리하여 중복 지원 불가
- (지적자격) 지적측량 분야(국토정보직, 보조직, 무기계약직)의 경우 지적자격(지적기술사/지적기사/지적산업기사/지적기능사) 보유자만 지원 가능
  - \*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(자격번호)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- (병역)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(고졸전형은 제외)
  - 단, 군 복무 중인 경우, 임용 예정일(2021.12.27.) 전에 전역한 자로 교육입소 및 인턴기간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
- 고졸전형은 병역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입사기준일 전일근무가 가능한 자

○ (고졸전형)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

-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포함
- 공고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지원 가능(임용예정일부터 전일근무 가능자)

\* 단, 18세 미만자는 제외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 가능)

- 전문대,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
- 지원서에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후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징계해고 됨에 유의

○ (경력증명서 기간종료일 기준) 경력증명서상 기간종료일이 현재일 경우 지원서 상에 경력사항 기간종료일을 접수마감일로 입력

\* 접수마감일 이후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.

○ (결격사유) 공사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제15조 (결격사유) 직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형의 집행유예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되거나,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6. <삭제> 2020.07.01.>
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10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□ 채용분야별 응시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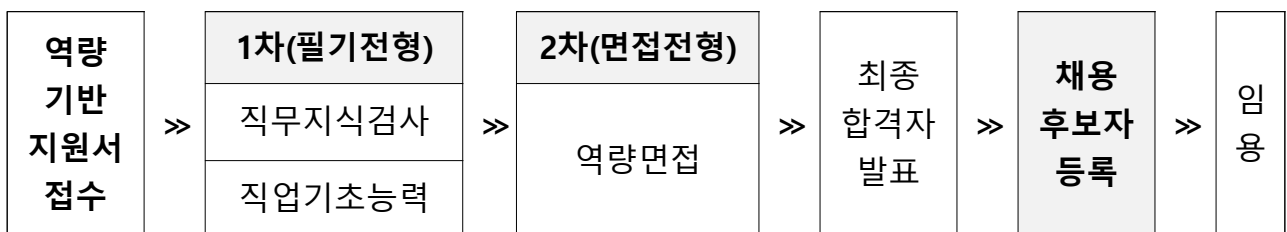
채용분야		자격 요건(모두 충족)	
기획경영직	기획·경영·회계	장애	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
	경영·회계	보훈	• 국가보훈처 추천자
국토정보직	지적·측량	일반(전국)	• 지적 자격 보유자
		지역모집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해당 지역(강원, 제주)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자)
		보훈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국가보훈처 추천자
		장애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• 현장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보조직(고졸전형)	지적·측량	일반	• 지적 자격 보유자 •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
무기계약직	지적·측량	일반	• 지적 자격 보유자

※ 지적자격 : 지적기술사, 지적기사, 지적산업기사, 지적기능사 중 1개 이상 보유

※ 자격증 기준일: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(2021. 11. 1.)까지 취득하여 등록번호(자격번호)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

2. 전형방법 및 절차

□ 직무능력중심 선발절차



□ 전형별 배점기준

역량기반 지원서	1차(필기전형)		2차(면접전형)	최종합격자 결정
적격/ 부적격	직무지식검사 (70%)	[직업기초능력]	역량면접(100%)	1차(60%) + 2차(40%) 합산
		직업성격검사 (적격/부적격)		
		직무능력검사 (30%)		

□ 전형별 안내

【역량기반지원서】

- 해당 직무와 관련된 교육, 자격, 경험 또는 경력사항 등을 작성하는 NCS 기반 직무역량 중심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
  - \* 인적사항(생년월일, 연령, 성별, 가족관계, 출신지역, 사진), 학교명, 전공, 학점, 어학성적 기재란 없음.
- 합격자 결정 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, 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 
단, 부적격 지원서의 경우 1차 시험 응시(수험표 출력) 불가
- 지원서 작성시 유의사항
  -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전형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함.
  -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첨부파일 미첨부 및 지원서 검토결과 **부적격\***으로 판정될 경우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
  - \* **부적격 사례:** 자격증 파일 첨부 항목에 다른 파일 첨부, 지원서 자격증 항목에 입력한 자격증 정보와 파일에 첨부한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, 자기소개서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입력, 자기소개서 최소작성 분량(문항당 400자)에 미달한 경우
  - 지원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
  -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 불가

## 【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개요】

시험구분	채용분야		시험내용(문항수)	시험시간
직업기초 능력평가	공 통		직업성격검사(150)	20분
			직무능력검사(60) (직무별 4개 영역)	60분
직무 지식검사	기획경영	기획행정	행정학(20), 경제학(20), 기초통계학(20)	70분
		경영회계	경영학(20), 회계학(20), 기초통계학(20)	
	국토정보	지적측량	지적학(15), 지적측량(20), 관계법규 I (15), 기초통계학(10)	
	보조직 (고졸전형)	지적측량	한국사(60)	
	무기계약	지적측량	지적측량(30), 관계법규 I (20)	
합 계				150분

### 【직업기초능력평가】

- 계산기 사용 불가
- (직업성격검사) 공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마인드 측정
  - 점수 미반영, 적합여부만 결정
- (직무능력검사) 직무별 NCS 직업기초능력 4개 영역
  - (기획행정/경영회계) 의사소통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조직이해능력
  - (지적측량) 수리, 문제해결, 정보, 기술능력

### 【직무지식검사】

- 계산기 사용 기준
  - (기획경영직) 단순 계산 기능 소형전자계산기만 사용 가능
  - (국토정보직, 무기계약직) 일반 공학용 전자계산기 사용 가능
  - \* 공학용 계산기는 사용자 본인이 감독자 앞에서 프로그램을 리셋한 후 사용
- 채용분야별 직무지식검사 내용 안내
  - (출제유형) 객관식(기획경영직/국토정보직/보조직 60문항, 무기계약 50문항)

- (관계법규 I)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지적측량 시행규칙」,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
  - \* 채용분야별(지적측량) 관계법규는 해당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을 포함하며, 채용공고일 기준 **현행법**으로 함.
- (기초통계학) 범위와 난이도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(제목: 기초통계학 예제문제)에 공지된 예시문제 참조
  - 40점 미만 득점하거나, 가산점을 합산한 총 점수가 60점(장애인 및 보훈분야 50점)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

### 【역량면접】

- 경험면접, 상황면접 등으로 공사 직원으로서 필요한 역량 검증
- 면접대상 인원: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(지적측량은 1.5배수)

### 3. 입사지원서 접수

접수기간 : 2021. 10. 25.(월) 10:00 ~ 2021. 11. 1.(월) 17:00

접수방법 : 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www.lx.or.kr)

- 지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지원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작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일 전에 접수하시길 바라며, 지원서 작성방법은 접수화면의 '작성요령' 참조

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 목록
입사 지원서 (스캔파일 첨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지적측량분야] 지적자격증 자격취득확인서</li> <li>* 큐넷(www.q-net.or.kr) 사이트에서 확인서 발급가능</li> </ul>
필기전형 합격자 (원서접수 시스템 업로드 제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[지역모집_강원/제주]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</li> <li>• [전북지역인재] 최종학교 재학, 졸업(예정)증명서</li> <li>• [고졸전형]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등학교 재학 : 고등학교 재학(졸업예정)증명서</li> <li>- 대학 미진학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자금대출·장학금신청증명서</li> <li>*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 및 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</li> <li>- 대학교 중퇴 : 대학교 제적(중퇴)증명서</li> </ul> </li> <li>• [남성]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(병적사항 포함)</li> <li>• [해당자] 가산점 대상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</li> <li>• [해당자] 공무원(지적업무) 경력증명서</li> <li>• [해당자] 취업지원대상자, 저소득층, 장애인 증명서</li> </ul>

\* 각 제출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, 사진 등 개인정보는 **마스킹** 처리 후 제출

## 4. 채용일정

구 분	일 자	비 고
지원서 접수	10. 25.(월) ~ 11. 1.(월)	온라인 접수
필기시험 안내	11. 8.(월)	지원서 적격여부, 필기시험 장소/시간 공지
필기시험	11. 13.(토)	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	11. 23.(화)	홈페이지, 지원서 접수사이트
역량면접	12. 2.(목) ~ 12. 3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12. 14.(화)	홈페이지, 지원서 접수사이트
채용후보자 등록	12. 14.(화) ~ 12. 16.(목)	
발령 예정일	12. 27.(월)	

\* 상기 일정은 업무 형편 및 코로나19 확산정도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## 5. 채용 우대사항

### □ 채용우대제도 적용방법

- 채용우대제도는 합격자 중 채용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로 추가로 합격, 단 공사가 정한 채용합격 하한선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
- 전형 단계별로 적용하며 각 채용분야별로 목표비율을 적용

### (1)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%

- (적용대상) 채용공고 기준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채용분야
- (적용방법) 면접전형 후 최종합격자 결정시 어느 한 성의 합격인원 비율이 20%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합격 하한선(합격선 -3점)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

※ 선발예상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,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



## (2) 이전 지역(전북)인재 채용목표제 30%

- 전북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지역 소재 학교 출신자의 채용확대를 위하여 지역인재채용목표제 시행
  - \*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
- **(이전지역인재 개념)**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·도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이하 “이전지역 학교”라 함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
  - ※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(8학기), 전문대학의 경우 2년(4학기)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한 자로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.
- **(적용대상분야)** 정규직 신규채용 중 선발예정인원이 채용분야별 연(年) 인원 5명을 초과하는 경우
- **(적용방법)** 각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30%에 미달하는 경우 채용합격 하한선(합격선 -5점) 이상인 이전지역인재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처리
  - ※ 인원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함.
  - ※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(2018.01.25.) 적용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제출 또는 작성서류에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무효처리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- **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(신분확인용)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 미지참시 퇴실 조치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  - (※ 인정되는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기간 만료 전의 여권)

- 합격 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을 거부하는 자는 합격 취소하고 1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.
-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.
-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며 입사포기자 및 부정합격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 합니다.
- 채용 단계별로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.
-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.
- 합격 후 근무지 배치는 본인 희망지역을 고려하되 공사의 인력운영 상황에 따라 전국 단위로 배치되며, 지적측량분야 신입사원은 정규직으로 임용 후 3년간(지역모집 합격자는 10년) 다른 지역본부로 전보가 제한됩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‘채용서류 반환청구서’를 작성하여 팩스(063-713-1609) 또는 이메일(lx0202@lx.or.kr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(단, 이메일 제출한 경우, 공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)
-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않으며, 청탁, 압력,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합격 이후에도 합격 취소가 가능하며 사법처리 등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- 공고 내용은 공사 업무 형편상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사전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.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다른 기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사에 취업할 수 없으며, 채용 이후에도 비위면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하고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1. 10. 13.



## 한국국토정보공사 채용 가산점 안내

### ○ 적용방법

- 가산점은 직무지식검사 만점의 %로 가산되며, 40% 미만 득점한 경우 가산점 미적용
- 취업지원가점, 자격가점, 경력가점은 각각 합산
- 취업지원대상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각 시험별 만점의 %로 가산

구 분		가 산 점 수	비 고
취업지원 가점 [붙임2 참조]	○ 취업지원대상자	10% 5%	
	○ 기초생활수급자 ○ 차상위계층 ○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	5%	
자격가점	○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, 도시계획기사, 토목기사, 정보처리기사, ○ 공인회계사, 변호사, 세무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공인노 무사, 한국사능력1급	2%	- 자격 가점은 보유자격에 따라 각각 합산하되 동일 자격의 경우 상위자격 하나만 인정 - 최대 4%까지 인정  (예시. 정보처리기사 와 정보처리기능사 보유시 자격가점은 2%로 적용됨)
	○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 기사, ○ 전산회계운용사 1급, 한국사능력2급	1.5%	
	○ 측량기능사, 전산응용토목제 도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 ○ 전산회계운용사 2급, 한국사능력3급	1%	
경력가점	○ 한국국토정보공사, 공무원(지적업무) 경력 - 89일이상 150일미만 - 150일이상 273일미만 - 273일이상 365일미만 - 365일이상 730일미만 - 730일이상	0.5% 1% 2% 3% 5%	

## 취업지원가점 가산점수 적용 비율 안내

대 상 별	10% 가점	5% 가점
독립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애국지사 본인</li> <li>· 순국선열 유족</li> <li>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애국지사 가족</li> <li>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</li> <li>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</li> </ul>
국가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 본인</li> <li>·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가유공자의 가족</li> <li>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</li> <li>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</li> </ul>
5·18민주유공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</li> <li>·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</li> <li>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 운동희생자의 가족</li> <li>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·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</li> </ul>
특수임무수행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</li> <li>·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</li> <li>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</li> <li>·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</li> </ul>
고엽제후유의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</li> </ul>
저소득층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</li> </ul>
장애인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</li> </ul>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